

의안번호	제 98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10인
발의연월일	2022년 10월 5일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	----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발 의 자 : 유상용,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박재주, 이윅희,
이정범 의원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안 제3조)
- 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안 제4조)
- 라.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관리(안 제5조~안 제6조)
- 마.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안 제7조~안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의안전문: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조례안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호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청 식의약안전과

라. 비용추계: 붙임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제6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공휴일 포함)하고,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1,018백만원(도비 100%)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66백만원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18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 출	66	131	230	230	361	1,018

- 산출내역 : 시간당 30천원 x 3시간/일 x 365일 x 4개소 = 131,400천원
 - 1차년도(2023년)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간 등을 감안 하여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함
 - 3차년도(2025년)부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지원 개소수	4	4	7	7	11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공공심야약국 지원 (도비100%)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450
재원 조달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1,018,3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지방세	65,700	131,400	229,950	229,950	361,3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